



# ■ 비상용 승강기 관련 개선 조치 사항

구분	개선 요청사항	조치 내용	비고
타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층 비상용 E/V 승강장 출입문 피난으로 방향 변경 (승강장 → 복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상용 승강기 출입구 개폐 방향, 법적 규정 없음</li> <li>출입문 방향: 최초 설계 허가 시 '승강장 → 복도' (최종) '복도 → 승강장'으로 설계 변경(인허가시)</li> </ul> <p>※ 변경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입문 개방 시 복도 통행자와 부딪치는 충돌사고 예방</li> <li>- 피난 대피 시 출입문 개방으로 장애 요인 발생 우려</li> </ul>	<p>비상용승강장 내부 잠실 구급대 확인함 ('23.10.19)</p> <p>첨부8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승강장 출입문 방향 변경에 따라 대피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복도상 문은 항상 개방</li> <li>피난방향이 분산(4방향)되도록 피난계획(유도체계) 개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층 십자 복도 문은 전체 항상 개방 유지 중이며, 남측 출입문은 버튼 누름 시 개방 방식으로 변경</li> <li>4방향 피난 유도체계 개선(양방향 거실 통로 유도등 2개소 추가 설치) 완료</li> </ul>	<p>첨부1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층 비상용 E/V 승강장 출입문은 승강장에서 복도로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는 구조로 변경 (출입문 안쪽 출입제한 보안장치 제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 신속 진입 개선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화재: 화재, 정전 시 자동 해정(첨부2)</li> <li>② 구조, 구급, 테러의 소방활동 시 진입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방출동 시 출입문 상시 개방 매뉴얼 수립 시행</li> <li>- 소방관 전용 출입 마스터키 1층 상시 비치(첨부3)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li>신속한 피난 및 소방활동을 위한 피난층 보안장치 제거(변경 버튼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p>※ 타워 테러대상시설(A급) 지정: 21년 5월 소방청 지정 테러방지법 등 법령에 따라 출입제한 보안장치 설치 (타워는 전층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일반인과 내부 직원 동선분리 및 출입통제 필요)</p> </li> </ul>	<p>소방서 현지적응훈련시 마스터키 위치 확인 완료</p> <p>관련근거 첨부2, 3</p> <p>관련근거 첨부4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층 보안데스크에 비상용 보안카드 비치하여 출동소방대가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급,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마스터키 10개 비치 완료 (1층 동측 데스크 내 보관함)</li> </ul>	<p>첨부3</p>



# ■ 비상용 승강기 관련 개선 조치 사항

구분	개선 요청사항	조치 내용	비고
타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(방화문)에 부착된 벽체 마감재 제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피난층의 비상용 승강기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(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)</li> <li>방화문을 훼손하지 않고 단순 부착한 마감재임</li> <li>마감 재료를 불연재료로 적용 (방화문 성능시험 인증기관의 질의회신 첨부)</li> <li>비상용승강기 출입문 식별 용이토록 시인성 개선완료</li> </ul>	첨부5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월드타워동, 쇼핑몰동의 비상(피난)용 승강기, 특별피난계단 위치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판 시인성 개선 및 피난동선 상 장애요인 제거 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타워&amp;몰 비상용 승강기 표지 보완 완료</li> <li>타워&amp;몰 특별피난계단 위치 표지판 보완 완료</li> <li>피난동선 상 장애요인 제거 완료</li> </ul>	첨부6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방계획서에 비상시 피난약자 대피방안을 고려한 피난계획(유도체계) 및 비상(피난)용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등 개선 반영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상용(피난용), 피난약자 승강기 안전관리계획 수립완료,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반영</li> </ul>	첨부7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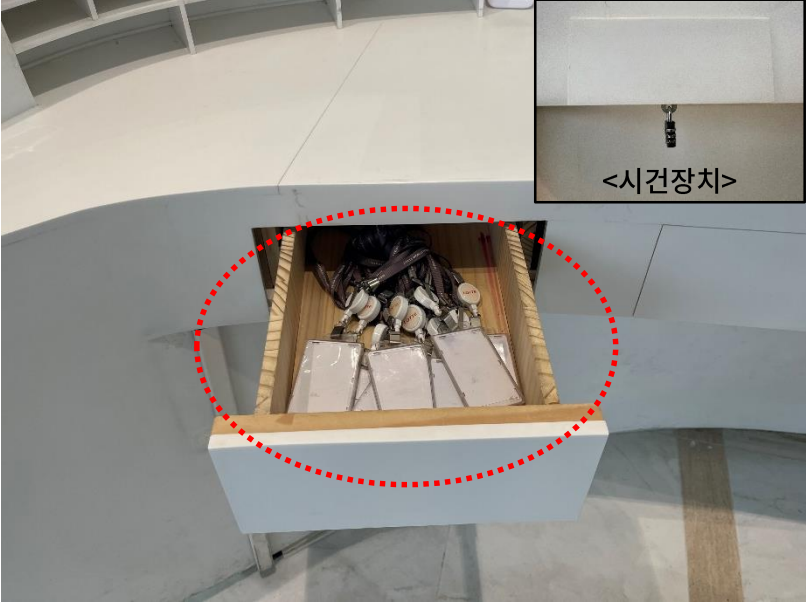
# ■ 첨부1. 1층 복도 내 유도등 추가

구분	개선 요청사항	조치내용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층 남측 복도 출입문에 보안장치 설치로 평상시 개방불가 (보안요원 동행시 가능, 화재 등 재난시 자동 개방)</li> <li>· 피난방향이 분산(4방향)되도록 피난계획(유도체계) 개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층 남측 복도 문은 버튼 누름시 개방방식으로 변경 완료 (필요시 버튼을 누르고 언제든지 통행 가능)</li> <li>· 양방향 거실통로 유도등 추가 설치 완료</li> </ul>
사진		

## ■ 첨부2. 타워 내 출입구에 설치된 시건 장치 사양


구분	개선 요청사항	조치내용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층 비상용 E/V 승강장 출입문은 승강장에서 복도로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는 구조로 변경 (출입문 안쪽 출입제한 보안장치 제거)</li> </u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중 안전장치 마련</li> <li>화재, 정전 시 자동 해정</li> <li>소방서 출동 시 원격 개방(종합방재실) / 마스터키비치</li> </o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층 비상용 E/V 승강장 출입문 안쪽 -&gt; 출입제한 보안장치 변경(버튼식)</li> </ol>
현황	<p>Trimec ES9000 Pre-Load Electric Strike</p>  <p>Trimec ES9000 Pre-Load Electric Strike</p> <p>Fail safe/fail secure changeable on site.</p> <p>The ES9000 has been designed to suit the harshest commercial environments, and has the unique feature of the ability to operate with up to 25kg of pre-load pressure on the keeper. Pre-load is a common condition that is caused by pulling on a door before it unlocks, the weight of warped or drooping doors, seals on fire doors, or by differential air pressure created when heating and cooling systems are in use.</p> <p>Standard features include multi voltage 10 - 30Vdc and field changeable settings from fail safe to fail secure.</p>	

## ■ 첨부3. 마스터키 비치완료


구분	개선 요청사항	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타워 1층 동측 안내데스크 내 마스터키 10개 비치완료(데스크 좌측)</li> <li>· 송파소방서 현지적응 훈련 시 마스터키 위치 확인 후 사용법 안내 교육 실시함</li> </ul>	
사진		

# ■ 첨부4. 테러관련 출입통제 관련 사항

국민중심의 안전가치에 일상의 안심을 더합니다.



## 소 방 청




수신 (주)롯데몰산  
(경유)  
제목 롯데월드타워 테러대상시설 지정 알림

---

1.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」에 따라, 우리 소방청에서는 귀사에서 관리·운영중인 롯데월드타워(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)에 대해 **다중이용시설(대형고층건물) 테러대상시설**로 지정('21.5.14일자)하오니,
3.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테러 대응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테러대상시설 지정 서식(롯데월드타워) 1부. 끝.

  
**소 방 청 장 인 인**

---

주임	김희웅	119구조과장	전결 2021.5.14. 이재순
협조자			
시행	119구조과-3414	(2021. 5. 14.)	접수
우	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,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119구조과 (나성동)	/ www.nfa.go.kr	
전화번호	044-205-7621	팩스번호	032-205-8986 / huiwoong@korea.kr / 비공개(2)

스스로 담당함, 청렴한 119!

1 - 1

# ■ 첨부4. 테러관련 출입통제 관련 사항

##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대책 해설서

### 1 개요

#### 1. 목적

「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대책 해설서」는 시설 내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, 테러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.

#### 2. 법적근거

가.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

구분	내용
법 제10조 (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)	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<b>테러 예방대책 수립</b>
영 제25조 (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)	인원·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, 테러 첩보의 입수·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,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을 포함하여 테러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구분	내용
법 제34조의6 (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·관리 및 훈련)	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행정안전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·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.
법 제82조 (과태료)	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·관리하지 아니하거나,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,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 미비사항시 과태료

다.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구분	내용
법 제9조 (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법 제11조 (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·운영)	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며, 종합방재실간 정보막 구축,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, 공동방화관리,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·조정한다.
법 제14조 (교육 및 훈련)	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,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법 제33조(과태료)	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법 제34조(과태료)	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시행규칙 제4조 (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)	총괄재난관리자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난관리 일반, 법 및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,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, 종합방재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,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, 피난안전구역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, 유해 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,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시행규칙 제6조 (교육 및 훈련 등)	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,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하여야 한다.

라. 「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」

구분	내용
제22조 (다중이용시설 지도·점검)	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B·C급 다중이용시설은 지방경찰청장이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·점검을 실시한다.
제29조 (테러예방교실)	경찰관서장은 시설 관리자·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테러동향, 최근 테러 발생사례, 테러발생시 조치요령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실시한다. <b>법정점검 실시</b>

# ■ 첨부4. 테러관련 출입통제 관련 사항

## 2 인원 및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

### 1. 인원에 대한 출입통제

#### 가. 인원 감시 및 CCTV 설치·운영방법

◆ 인원 감시를 위한 적절한 수의 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, 이용객의 수상행동을 감시하여 테러 등의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① CCTV 설치

- 시설 내 사각지대\*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.  
\* 시설 내의 물품보관함, 화장실, 쓰레기통, 방치된 노점상 등.
- 건물 내부의 경우, 입구와 출구에 각각 얼굴과 신체의 정면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- 건물 외부의 경우, 주변 지형지물에 대한 간섭없이 인원이 건물 진입하는 장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.
- 나무나 가로등 등의 장애물을 활용해 CCTV에 접근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.

#### ② CCTV의 운영방법

- CCTV는 24시간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한다.
- 설치목적 및 장소, 촬영범위 및 시간,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의 내용을 포함한 24시간 비디오 감시 알림 표지판을 게시\*한다.  
\*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4항과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알림 표지판 게시.
- 고화질 녹화 여부 및 최대 30일\* 간의 저장 공간을 확보한다.  
\*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삭제.
- 녹화된 CCTV 영상은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범죄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내용의 영상은 저장\*(의심스러운 행동 식별 및 저장)할 수 있다.  
\*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50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저장.

#### 나. 인원에 대한 출입보안 및 통제

◆ 내부 직원 및 이용객(방문자 등)의 동선을 분리하여 테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출입가능 구역\*을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한다.  
\* 일반구역(내외부인 모두 사용)/ 제한구역(시설재산 보호: 사무실 등 업무장소)/ 통제구역(시설기능 보호: 상황실, 공조실 등)으로 출입가능 구역 설정

#### ① 이용객 통제 **내부직원과 이용객의 동선 분리**

- 신원확인 및 검문·검색 없이 이용객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구역을 ‘일반구역’으로 설정한다.  
\* (예시) 출입문, 로비, 판매시설, 고객센터 등.
-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여 인원의 순차적 입출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구분·관리하고, 상황 시 신속한 대피와 함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띠 등 접근 통제장비 및 시설물을 배치한다.

#### ② 내부 직원 및 방문자 통제

- 시설의 재산과 핵심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직원 및 업무와 관련한 방문자(내부직원이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출입 가능)만 접근 가능한 ‘제한구역’ 또는 ‘통제구역’으로 설정한다.
- 직원 및 방문자 신분을 확인하고, 사진이 부착된 출입증을 발급하는 등의 출입절차를 거쳐 출입하도록 한다.  
※ 직원에게 사진이 부착된 출입을 발급 + ID 데이터베이스 관리.
- 위해물품 및 위험물질\* 등 반입을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검문·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.  
\* 「테러방지법」 제10조 제1항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 제6항에 따른 ‘테라이용수단’ 및 ‘사고대비물질’에 대한 관리·통제.  
※ 사고대비물질 수량 지정기준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3의 2 위험물질 관리대장 「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 서식

#### <인원통제 시 필요한 관련 장비 및 시설>

- ▶ 특정한 구간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
- ▶ 출입구역별 진출입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라인(안전띠, 바리케이트 등)
- ▶ 인원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봉 및 호루라기, 확성기 등 음성장비
- ▶ 출입관리 관련 ID 발급 시스템(출입 관리대장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)
- ▶ 위해물품 및 위험물질 보관함(반입 관리대장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)
- ▶ 금속탐지기 및 분사기 등의 검색 및 보호장비



# ■ 첨부5. 방화문 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질의회신 내용

## 열린마당

KICT뉴스



입찰/견적



문고답하기



↳ 문고답하기

↳ (구)문고답하기

인재채용



청렴신고센터

견학안내

화재안전 불법건축자재신고

작업중지 요청제

## 문고답하기

☞ > 열린마당 > 문고

### 기존 갑종방화문에 불연재질의 마감재를 취부할 수 있는지 여부

작성자 박\*\* | 작성일시 2020/03/26 09:56:59 | 조회수 1614

안녕하세요,  
제목 그대로 기존 성능을 인정받아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에 불연재질의 마감재를 취부(인테리어성)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.

답글

작성자 홍성인 | 작성일 2020/

안녕하세요?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입니다.  
우선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.

문의하신 내용은 자동방화셔터, 방화문 및 방화담퍼의 기준에 따라 성능을 확인한 방화문에 불연성 마감재 부착(비파괴)사용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.

아울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“문고답하기”란은 문의하신 내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분야에서 기술지식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답변의 의무 및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# ■ 첨부5. 방화문 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질의회신 내용



KICT뉴스 +

입찰/견적 +

문고답하기 ▶

↳ 문고답하기

↳ (구)문고답하기

인재채용 +

청렴신고센터

견학안내

화재안전 불법건축자재신고

작업중지 요청제

## 정보공개 문고답하기

☞ > 열린마당 > 문고답하기

### 방화문에 마감재 부착 가능여부 문의

작성자 이\*\* 작성일시 2018/05/14 16:57:28 조회수 2652

- 계단실의, 방화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에, 주변의 인테리어와의 통일성을 위해, 동일한 마감재를 부착할 경우, 방화기준에 부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.  
1)가연성 자재일 경우 (석고보드), 또는 2) 가연성 자재가 아닌 경우 (돌)
- 만약 1번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면, 부합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?  
예) 인증시험 필요
- 2번에서 인증시험 등이 필요할 경우, 필요한 기간과 비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답글

작성자 작성일 2018/05/29

안녕하세요? 화재안전연구소입니다.



문의하신 방화문은 국토교통부 고시 "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"제8조제3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로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방화문의 처짐 등 구조적 성능에 영향이 없는 불연재료(접착제 포함)로 마감하는 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031-369-0633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# ■ 첨부6. 비상용승강기 출입문 식별 디자인 시공 완료

구분	개선 요청사항	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층 십자복도 진입 시 신속한 비상용 승강기 식별 가능</li> <li>• 타워 1층 비상용승강기 입구 돌출 디자인 제작 및 부착완료</li> </ul>	
조치내용	비상용 승강기 돌출 디자인	비상용 승강기 돌출 사인 부착 사진
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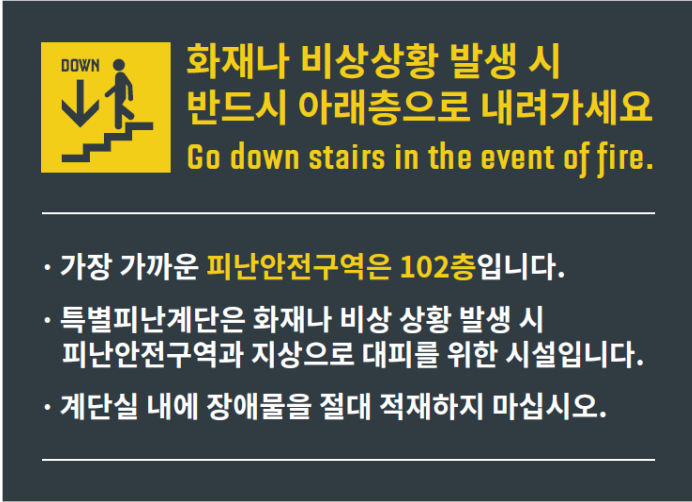

## ■ 첨부6. 월드몰 비상용 승강기 표시 시공 완료

구분	개선 요청사항	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월드몰 내 비상용 승강기 입구 식별 가능</li> <li>비상용 승강기 디자인 제작 및 승강기 전체층 입구 부착 완료</li> </ul>	
조치내용	비상용 승강기 돌출 디자인	비상용 승강기 부착 사진
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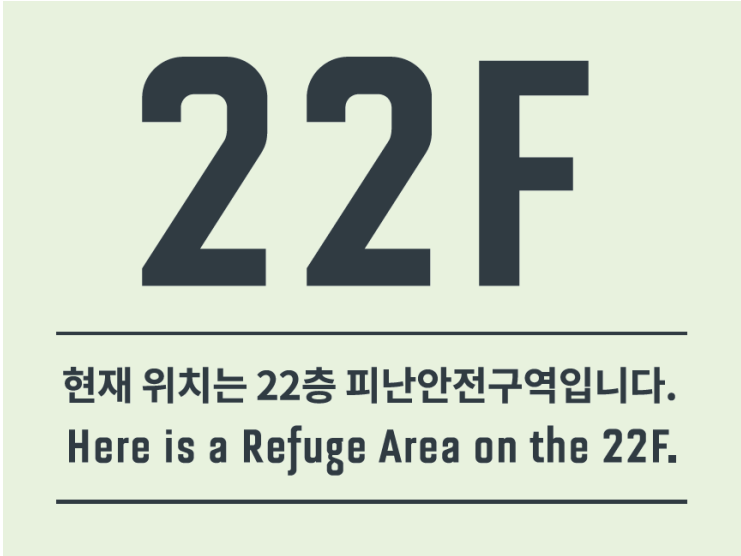

# ■ 첨부6. 피난안전구역의 목적 및 용도 안내 표지 시공 완료

구분	개선 요청사항	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피난안전구역의 목적 표시 및 장애물 적치 금지 안내</li> <li>타워 내 모든 피난안전구역 입구 부착 완료(22F, 40F, 60F, 80F 102F 피난안전구역 有)</li> </ul>	
조치내용	피난안전구역의 목적 및 용도 부착 사진	피난안전구역의 목적 및 용도 부착 사진
		

# ■ 첨부6. 특별피난계단 피난 안내 및 목적 표지 시공 완료

구분	개선 요청사항	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별피난계단 전실 내 층별 가장 근접한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 안내</li> <li>• 특별피난계단 목적 및 용도 명시, 전실 내 가연물 적치 금지 경고</li> <li>• 목적 및 용도 디자인 제작 타워 전층 특별피난계단 전실 내 부착 완료</li> </ul>	
조치내용	특별피난계단 피난 안내 및 목적 디자인	특별피난계단 피난 안내 및 목적 부착 사진
	 <p><b>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반드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세요</b> Go down stairs in the event of fire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장 가까운 피난안전구역은 102층입니다.</li> <li>• 특별피난계단은 화재나 비상 상황 발생 시 피난안전구역과 지상으로 대피를 위한 시설입니다.</li> <li>• 계단실 내에 장애물을 절대 적재하지 마십시오.</li> </ul>	

## ■ 첨부6. 피난안전구역 층별 표시 시공 완료

구분	개선 요청사항	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워 내 재실자의 층별 위치 파악 가능</li> <li>• 타워 내 모든 피난안전구역 입구 부착 완료(22F, 40F, 60F, 80F 102F 피난안전구역 有)</li> </ul>	
조치내용	피난안전구역 층별 표시 디자인	피난안전구역 층별 표시 부착 사진
		

## ■ 첨부6. 쇼핑몰 1층 복측 후방 복도

구분	개선 요청사항	조치내용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피난동선상 장애요인 제거(출입통제 시스템 매장 설치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철거 완료</li> <li>· 상시개방 유지 중</li> </ul>
사진		



# ■ 첨부7. 피난약자 대피방안 수립 및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

## 구분 개선 요청사항 및 조치내용

**내용**

- 소방계획서에 비상시 피난약자 대피방안을 고려한 피난계획(유도체계) 및 비상(피난)용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등 개선 반영 제출
  -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완료 :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포함
  - 단지 전체 재해약자 분기별 조사 중 : 화재시 최우선 대피
  - 피난용 승강기 운행 매뉴얼 수립 및 인원배분, 훈련 매월 시행 중(9월 훈련시 122회 운행 2,440명 이송)

**■ 재해약자 피난계획**

1. 롯데월드타워&몰 피난계획

※ 재해약자는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 1차 안전구역으로 이동 후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우선 대피 실시.

[롯데월드몰 피난동선]

[롯데월드타워 피난동선]

2. 피난유도 우선순위 및 대피유도 방향

1) 대피 우선순위

구분	지상층 재난발생	지하층 재난발생	비고
1 순위	재난발생 층 피난유도	재난발생 지하층 피난유도	우선순위는 재난종류 및 상황을 감안하여 총괄재난관리자가 현장에서 변경하여 적용 가능함
2 순위	재난발생 직상 4개층 피난유도	재난발생 지하층의 직하층 피난유도	
3 순위	최상층부터 지하층의 순서로 피난유도	재난발생 지하층의 지상층 피난유도	

< 2 >

**■ 재해약자 피난계획**

2) 층별 인원

층	타워							
	거주층	인원	거주층	인원	거주층	인원	거주층	인원
11층	1		45층	1	29층	2	17층	1
9층	1		37~38층	24	28층	2	16층	4
7층	1		36층	18	24층	5	15층	9
지하2층	2		35층	1	19층	3	14층	3
			30층	1	18층	1	11층	2
계	5		계				계	85

3) 물

거주층	운영사	성별	나이	재해약자 유형	비고
11층	롯데시네마	남	47	장애인	
9층		여	32	임산부	
7층	롯데문화재단	여	34	임산부	
B2F	롯데마트	여	38	언어장애	
		남	31	지적장애	

< 8 >

사진



# ■ 첨부8. 잠실 구급대 비상용 승강장 내부 들것 전개 가능여부 확인('23.10.19)

